#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호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931

발의연월일: 2025. 4. 17.

발 의 자: 안호영·박지원·한민수

정을호 · 신영대 · 박홍배

이학영•박 정•김태선

전진숙 · 강득구 · 이춘석

박해철 의원(13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·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.

그런데 가입대상을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제한할 것이아니라, 업종별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, 공공기관 중 상대적으로 열악한기관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범위를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등 으로 확대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4호 및 제23조의6제1항).

법률 제 호

##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4호 중 "중소기업(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. 이하 같다)"을 "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·지방공사·지방공단(이하 "중소기업등"이라 한다)"으로, "중소기업 사용자"를 "사용자"로 한다.

제23조의6제1항 중 "중소기업"을 "중소기업등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(정의) ------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13. (생 략) 1. ~ 13. (현행과 같음) 14. "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 14. ----------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 도"란 중소기업(상시 30명 이 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「지 에 한정한다. 이하 같다) 근 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 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 영기업 · 지방공사 · 지방공단 (이하 "중소기업등"이라 한 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 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 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----사용자-----공동의 기금을 조성・운영하 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 는 제도를 말한다. \_\_\_\_\_\_ 15. · 16. (생략) 15. · 16. (현행과 같음) 제23조의6(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23조의6(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의 설정) ① 중소기업의 제도의 설정) ① 중소기업등--사용자는 제23조의5에 따른 중 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 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 여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 거나 의견을 들어 공단과 계약

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	
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	
다.	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